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 1. 심사경과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 가. 제안사유

- 본 조례 4조(기금의 용도)에 세분화 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 중 유사한 용도를 통합하고 위해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과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 성과분석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유사한 기금용도의 통합(제4조 제6호)
  - 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제4조 제8호)
  - 위생시설 개선사업 지원(제4조 제8호)
  - 기금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제4조 제9호)
    -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 위원회 기능(제7조 제1호)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 기금운용결산 및 계획 변경(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
    -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 제출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기금사업은 법 제42조 ①에 열거한 사업과 법 제71조의 2에서 포상금 지급범위를 명시 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 중 제4조의 6항 및 7항을 법문대로 개정하고 유사한 문항을 삭제 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 제6조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서로 내용을 삽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 제 15조 2항의 사항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결산)에 따라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정 된 것으로,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결산승인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결산보고서를 6월말까지 제출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는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다음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결산승인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본 조례안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를 6월말로 규정하고 있는것과 제천시의회운영 조례와 배치한 사항이 있는데, 6월말에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위원장 윤성열)

##### 나. 답변요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에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천시의회 운영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5. 소수의견

“없음”

#### 6. 토론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